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4. 11. 28.>

현장실습과목(제7조제1항 관련)

의료기사·안경사 종별	과목명	인정 과목명	최소 이수시간
1.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임상병리사 임상실습	320시간
2. 방사선사	방사선사 현장실습	방사선사 임상실습	320시간
3.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현장실습	물리치료사 임상실습	640시간
4.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현장실습	작업치료사 임상실습	320시간
5.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치과기공사 임상실습	160시간
6.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현장실습	치과위생사 임상실습	320시간
7. 안경사	안경사 현장실습	안경사 임상실습	320시간

비고

1. 위 표의 “인정 과목명”이란 과목 명칭에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명을 말한다.
2. 의료기사·안경사의 종별로 위 표의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시간의 합계가 최소 이수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표의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에 “Ⅰ”, “Ⅱ”, 및 세부 학습 내용 등을 추가해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안경사의 업무 현장에서 진행한다. 다만, 치과기공사의 현장실습 장소는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